

### 별첨 3.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가점인정 기준

#### □ 기본원칙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2개 이상의 대학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#### 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

##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『고등교육법』 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 상의 ‘분교’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교육부에서 분교로 인가받은 경우만 인정)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 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지방대학 졸업여부 입증

- 면접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입증하되,
-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학교장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입증

※ 이전지역인재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(우리 공단의 경우 “제주”)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